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 상향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758호)

2022.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요지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2022년 2월 11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험료의 신고 등 사업주가 해야 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인가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가취소가 침익적 행정행위임을 고려할 때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 ④ (생략)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u> <u>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u> <u>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u> <u>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u> <u>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u>

현행	개정안
<신설>	<u>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u> <u>⑥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등은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등에게 해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예컨대 보수총액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등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46조).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보험사무대행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법인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함(법 제33조제2항).

또한, 현행법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보험사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

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33조제3항·제4항).

아울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33조제5항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보험사무가 중단된 경우나 보험사무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별첨> 참조).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제4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입법하려는 것으로,

인가의 취소는 누리고 있는 이익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인가요건 규정보다 명확성 원칙이 보다 강하게 요청되므로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과 같이 그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하게 직접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제6항)은 인가 및 인가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인가와 관련된 하위법령 위임 근

거는 현행법 제33조제2항1)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38

-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생략)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⑤ (생략)

<별첨> 보험사무대행기관 관련 주요 규정

법령	주요내용	관련 법령 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사무 대행 근거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 한 신고 등 <u>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u> <u>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u> <u>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u> <u>있다.</u>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④ <u>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u> <u>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u> <u>고하여야 한다.</u> ⑤ <u>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u> <u>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u> <u>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u> <u>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u>
	보험사무 대행 시 인가 근거	
	업무 폐지 지 신고 근거	
	인가취소 사유	
	지원금 교부 근거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u>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u> <u>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u> <u>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u>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인가 취소 사유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

법령	주요내용	관련 법령 조문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생략)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